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. 20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.12. 유호렬 의원 외 13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1.12.
- 다. 상정일자 : 제20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7.1.2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(안 제6조)
- 2)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(안 제7조)

- 3)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면적(안 제8조)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
- 5)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(안 제13조)
- 6) 공공조형물 관리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유호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복지도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입법예고(2017.01.13 ~ 2017.01.17) 결과 의견은 없으며,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.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관리규정 부재,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,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략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제정된 것임.

마포구의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은 합정로의 정몽주 선생 동상 등 총6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<참고자료 1> 과 같음.

또한,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고 인공구조물로서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조형물의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【참고자료 1】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현황

연번	명 칭	위 치	건립주체 및 관리기관	건립일자
1	정몽주 선생 동상	마포구합정동 (양화대로 녹지대)	공원녹지과	1971
2	이지함 선생 동상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
3	염 원	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노타리 (교통섬 녹지)	공원녹지과	1988
4	황포돛배	마포구 창전동 (서강나루공원)	공원녹지과	2009
5	이지함 스토리텔링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
6	용 상징물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